

'99년도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안

산업건설위원회

'99년도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99년 10월 28일

나. 회부일자 : '99년 10월 28일

다. 상정일자 : '99년 11월 2일

○ 제안설명 : 건축과장

라. 의결일자 : '99년 11월 3일

2. 제안설명요지

1) 제안이유

- '99년도 충주시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채무보증에 대하여 충주시장의 기관보증을 동의 요구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99년도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 192,000천원의 융자에 따른 시장의 채무보증 동의
- 융자제원 : 국민주택기금
- 상환조건 : 2년이내 일시상환(이율:연3%), 단 전세 재계약시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 융자세대 : 20세대, 192,000천원
- 융자기관 : 한국주택은행 충주지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도시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99년도 저소득영세민에게 전세자금으로 192,000천원(20세대분)을 용자금지급을 위한 채권 채무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충주시장의 기관 보증이 필요되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자료집행에 원할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안건에 대해 채무보증 승인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 답변 요지

- ▶ 질의 : 연대보증은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자 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은자로 되어 있는데 어느것을 선택하여야 하는지?

<답변> 두가지중 민원인이 편리한 것으로 한가지를 선택하면 됨.

5. 심사결과

- '99년도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용자채무보증안 : 원안가결

6. 붙임

- '99년도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용자채무보증안 1부 끝.